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0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8.

발 의 자 : 구자근 · 인요한 · 김선교
최수진 · 박준태 · 최은석
박성민 · 강대식 · 박덕흠
강승규 · 김위상 · 김도읍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,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.

그런데 지난 2022년 ‘관교 데이터센터 건물 화재’ 사례에서 보듯이 데이터센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장애로 전 국민의 불편 및 국가적·산업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데,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결함, 과충전으로 인한 과열 등으로 건물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

11조의2제1항 단서 신설).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해당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(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)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해당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(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)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
1. ~ 4. (생략) ② ~ ⑫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⑫ (현행과 같음)